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가단51272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2. 6. 접수 제440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4. C과 사이에, C이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피보험자 D은행, 보험가입금액 40,000,000원, 보험기간 2017. 10. 14.부터 2027. 10. 14.까지로 정한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D은행에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C은 같은 날 위 보험증권을 담보로 D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D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40,000,000원을 대출기한 2027. 10. 1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C은 2019. 7. 16.부터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의 분할 상환을 연체하여 보험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2020. 2. 17. D은행에 보험금으로 C의 대출금 잔액 33,333,3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134284호로 지급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22. 2. 21. 'C은 원고에게 33,497,680원과 그중 33,333,300원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7.9%,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76,2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2. 5. 24. C에게 송달되어 2022. 6. 8. 확정되었다.

마. 한편, C은 2019. 12. 5.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2. 6. 접수 제44084호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9,893,000원, F카드에 13,510,000원, D은행에 38,833,000원, G에

10,054,000원, H은행에 6,010,000원, I카드에 2,560,000원, 피고에 대하여 60,000,000원 합계 138,86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J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7. 10. 14. 원고와 C 사이에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이 체결되고 C이 2019. 7. 16. 보험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수개월 후인 2020. 2. 17.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C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C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0. 28. C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2.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9. 11. 3.에도 C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9. 12. 6. C과 위 각 대여금 및 그 동안의 금전거래를 1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그 변제행위로서 매매대금을 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당시 C의 채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당시의 시세 이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은

별지